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8.3.30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건대입구역 3-3특별계획구역 / 광진구 자양동 2-6일대		
의결번호	2018-08-1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
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구조안전 분야 >

- 전이매트 및 전이 기둥, 특수전단벽 경계 요소 등의 배근(내진) 상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공시 문제가 없도록 구조 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.
- 연성에 대한 검토를 구체화하여 연성비를 정량화하여 표기하고 그 근거를 제시바람.
- 기둥식 아파트 기준층 활화중에 간막이하중($1\text{KN}/\text{m}^2$)을 추가하여 각 층 슬래브 및 기둥 기초부재 재검토 바람.
- 구조계산서상 일부 기둥의 기초 편칭 ratio=0.99~1.00 수준으로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재확인하여 내력상 부족분이 없는 지 검토 바람.
- 건축 슬래브 역타설 공법(sps공법) 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 상주 바람.
- 구조도면은 시공자가 설계자의 의도를 알기 쉽고 공감하여 정확히 시공이 가능하도록 수정(보완)하기 바람. 끝.

2018.3.3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